

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
신체적 학대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-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
- 멍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
-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-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
- 흥분,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
-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-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-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-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-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-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



방임
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
- 대소변 냄새, 땀, 열증, 욕창 등이 방치됨
- 의복 및 이발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
-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(자기방임)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
- 노인을 사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

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·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**129** 또는 **1577-1389**

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!! [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]

노인학대 없는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.